긴급동의

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의자
7	5	1986. 2 . 13 .	총재 박성상

의 안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 일부 개정

의결사항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제64조 및 제65조

제의취지 최근 시장실세금리의 안정화 추세 및 제2금융권 금리의 인하조치에 맞추어 CD 발행 및 대출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유사 금융자산간의 금리체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업금융비용 부담의 경감에 기여케 하고자 본 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 고〉 관계법규조항 발췌

한 국 은 행 법 제 7 조

① (생 략)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한 국 은 행 법 제 64 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요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한 국 은 행 법 제 65 조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붙 임)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여수신 최고이율 및 부대조건" 일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가. 최고이율 : 연11.75% 나. - 마 (생 략)	1.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가. 최고이율 : 연 11.5% 나. - 마 (현행과 같음)
2. 양도성예금증서 발행대전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가. 최고이율 : 연 12.75% 나. - 다 (생 략)	2. 양도성예금증서 발행대전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가. 최고이율 : 연 12.5% 나. - 다 (현행과 같음)
3. - 4 (생 략)	3. - 4 (현 행 과 같 음)
(신 설)	5. 실시일자 : 1986. 2. 14
	6. 경과조치 가. 1986. 2.13 이전에 이미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는 종전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나. 1986. 2.13 이전에 이미 취급한 양도성예금증서 대출에 대하여 어음대출의 경우에는 어음기일까지 종전이율을 계속 적용하며, 증서대출의 경우에는 1986. 2.13 까지의 이자계산은 종전 이율을, 1986. 2.14 이후의 이자계산은 개정이율을 각각 적